#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31

발의연월일 : 2021. 11. 16.

발 의 자:이용우·김상희·민병덕

민형배 · 박찬대 · 오기형

유재갑 • 이탄희 • 홍정민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과 관련 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방지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한 경우부터 적용하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 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 조치) ① -----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 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따른 지방공기업-----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 |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